「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7. 9. 6. 개정 판 (시행 2017. 9. 1.) → 2020. 6. 8. 개정 판 (시행 2020. 6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198/compare?from=879&to=1000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3:47:4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학부 유학생, 대학원 유학생,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에에게 적용한다.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.	**제3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학부 유학생, 대학원 유학생,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에에게 적용한다. 〈개정 2020-06-08〉
제4조(주관부서)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〈전면개정 2017-09-06〉 1. 학부 유학생: 입학처 2. 대학원 유학생: 대학원 교학팀 3. 교환학생: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. 어학연수생: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, 안전,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. 1. 학부 유학생: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2. 대학원 유학생: 대학원 교학팀 3. 교환학생: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. 어학연수생: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	**제4조(주관부서)**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〈전면개정 2017-09-06〉 1. 학부 유학생: 국제교육원〈개정 2020-06-08〉 2. 대학원 유학생: 대학원 교학팀 3. 교환학생: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. 어학연수생: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, 안전, 상담,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.〈개정 2020-06-08〉 1. 학부 유학생: 국제교육원 2. 대학원 유학생: 대학원 교학팀 3. 교환학생: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. 어학연수생: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
제5조(관리부서)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입학처: 학생의 입학에 대한 관리 및 지도〈개정 2017-09-06〉 2. 교무처 학사지원팀: 유학생의 수업,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. 학생지원처: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. 사무처 재무실: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. 생활교육관: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	**제5조(관리부서)**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국제교육원: 유학생의 입학 및 학습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〈개정 2017-09-06〉 2. 교무처 학사지원팀: 유학생의 수업,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. 학생지원처: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. 사무처 재무처: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. 생활교육관: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
제19조(문화활동) 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. 〈개정 2017-09-06〉	**제19조(문화활동)** 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, 기타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. 〈개정 2017-09-06〉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적용한다.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."를 "적용한다. 〈개정 2020-06-08〉"로

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주관부서)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1. 학부 유학생: 국제교육원
2. 대학원 유학생: 대학원 교학팀
3. 교환학생: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
4. 어학연수생: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
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, 안전, 상담,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.
1. 학부 유학생: 국제교육원
2. 대학원 유학생: 대학원 교학팀
3. 교환학생: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
4. 어학연수생: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관리부서)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국제교육원: 유학생의 입학 및 학습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무처 학사지원팀: 유학생의 수업,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
3. 학생지원처: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
4. 사무처 재무처: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
5. 생활교육관: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

제19조 중 "문화체험"을 "다양한 문화체험"으로 하고, "및 유학생"을 "및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, 기타 유학생"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